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의안 번호	9580
----------	------

요구연월일 : 2025. 4. 3.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고민정
김남희 · 김병주 · 김성희
김용만 · 김용민 · 노종면
모경종 · 박민규 · 백승아
부승찬 · 서미화 · 송재봉
안태준 · 양문석 · 윤건영
윤종균 · 이소영 · 정준호
정진욱 · 조계원 · 추미애
의원(24인)

주 문

국회의원(박충권)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은 2025년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언 중인 동료의원을 향해 “공산당원!”, “공산주의자” 라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망언과 막말을 쏟아 냈음.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은 북한에서 태어나 공산주의 체제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로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국내 정치적·사회적으로 갖는 폭력성과 분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공산주의자”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과 전혀 상관없는 막말·망언이자 철 지난 색깔론을 버젓이 꺼내들었음.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과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임.

라.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앞두고 국가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이 촉발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임. 이러한 시기에 국민 통합과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고 봉합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현 시국과도 동떨어진 색깔론을 꺼내든 것

은 국민분열 조장을 넘어 이념갈등을 부추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고 불복하려는 정략적이고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국회의원 박충권의 막말·망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헌정질서 수호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헌정질서 유린 상황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방조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국회법」 제24조(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바.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토론 중이던 국회의원 강유정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에 혼란을 야기시켰음. 국회의원 박충권은 이학영 부의장의 경위 설명 요구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도망치듯 나가 소위 ‘옥튀’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재차 언론을 대

상으로 “나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마은혁은 인민노련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고 근거 없는 인신 모독과 인식 공격을 이어 갔음. 이도 모자라 자신의 SNS에 ‘저는 마은혁이 공산주의자라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과와 반성은커녕 제2차 가해와 온라인 유포까지 서슴지 않았음. 또한, 국회의원 박충권은 지난 2024년 7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최민희가 “전체주의”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여 국회의원 최민희의 공식 사과를 받았음에도 정작 본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망언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음.

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본회의장의 혼란을 야기시켜 결의안 채택을 어떻게든 무산시켜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이는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반한 소지가 있음.

아. 이와 같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바, 「국회법」 제155조제16

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